##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900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이주환・권명호・金炳旭

김용판 · 김학용 · 서일준

안병길 · 이명수 · 전봉민

정찬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위해 확보한 시료를 장기간 저장 관리하여 환경오염·환경훼손 예방에 지속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시설로서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연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국민 생활환경의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시료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다양한 시료를 보관하기위해 초저온 저장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환경시료를 활용한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시료"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및 퇴적물 등의 시료를 말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 상태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연구 등을 위 하여 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환경시료의 확보·저장·활용
  -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저장·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9. "환경시료"란 환경오염과 환
	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
	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및 퇴적물 등
	의 시료를 말한다.
<u> &lt;신 설&gt;</u>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은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
	• 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
	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②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
	<u> </u>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u> 및 운영</u>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 <u>인력양성</u>

-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

   과의 협력
-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 전장·활용을 증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
- ③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 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